

공시송달공고

「건축법」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일

파주시장

1. **공고제목:** 건축신고 취소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**처분내용:** 건축신고 취소
3. **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**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
4. **법적근거:** 「건축법」 제14조제5항
5. **공시송달 대상**

신고번호	건축주	대지위치	신고목적	건축(연)면적(㎡)	처분내용
2010-교하읍- 신축신고-38 (2010-01-20)	최○덕	야당동 78-1(분할 후 78-39), 78-2, 78-3(분할 후 78-33)	단독주택	39.06(47.66)	건축신고 취소
2010-교하읍- 신축신고-36 (2010-01-20)	최○덕	야당동 78-1(분할 후 78-38)	단독주택	39.06(47.66)	건축신고 취소

6. **공고기간:** 2026. 6. 2. ~ 2026. 6. 16.(14일간)
7. **공고방법:**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
8. **기타:**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(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파주시청 허가3과 건축신고3팀(☎031-940-474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